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아이돌봄정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00.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 팩스 : 02-2100-60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삼림엔지니어링(김인석)

나. 전화번호 : 02-403-0951

2. 명칭 : Wireless-Portable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성능평가 및 진단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궤도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열차 차단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재료의 구조 및 내구성능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본 시험장비의 운용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기술로서 궤도유지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범위>

이동식 대차에 구축된 하중인가 장치와 변위측정기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이동하며 다수의 측점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재료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본 시험장비를 운용하고 측정데이터의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포함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콘크리트궤도 탄성재료의 성능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진단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